

제 49회 이사회 회의록

2024. 4. 17(수)

(사)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I. 기본사항

1. 회의 일시	2024년 4월 17일(수) 10:30
2. 회의 장소	신격호 롯데장학관 지하1층
3. 재적 임원	이사 7명, 감사 2명
4. 출석 임원	이사 : 장혜선, 조돈영, 홍익태, 김성화, 정귀옥, 한진우 감사 : 김재록
5. 결석 임원	남상응 이사, 이인섭 감사
6. 기록 및 보고	이기현 차장, 김충훈 대리


II. 회의 안건

구분	안건
의결 안건	제1호 안건: 신규 임원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상임이사 제도 신설 및 정관 변경의 건

III. 회의록

발언자	회의 진행 관련 의사록
이승훈 사무총장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 의 식순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과 회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시고 나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진행, 그 다음 질의 및 의견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폐회하는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혜선 의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자	회의 진행 관련 의사록
장혜선 의장	<p>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p> <p>오늘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중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의 정족수에 달하므로 합법적으로 성원되었습니다.</p>
이승훈 사무총장	<p>그럼 먼저 이번 이사회는 안건별로 사무국에서 세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심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p> <p>오늘의 예정된 심의 안건은 총 2건입니다.</p> <p>제1호 신규 임원 선임의 건 제2호 상임이사 제도 신설 및 정관 변경의 건</p> <p>이렇게 총 2건에 대하여 브리핑 받으신 후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이승훈 사무총장	<p>제 1호 신규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p> <p>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오랜 기간 수고하신 남상응 이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셨으며, 위신삼, 감사는 장학재단의 장학관 임무를 맡아 승석이 되었습니다.</p> <p>먼저 신임 김종민 이사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김종민 이사 후보께서는,</p> <p>(2015년 ~ 현재) 변호사</p> <p>(2017년 ~ 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p> <p>(2014년 ~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하셨습니다.</p> <p>이어서 왕기현 감사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왕기현 감사 후보께서는,</p>

	<p>(2022년 ~ 현재) 세무법인 텍스키 회장</p> <p>(2010년 ~ 2018년) 오비맥주 감사, 롯데렌탈 감사</p> <p>(2007년 ~ 2011년) 중부청 국제청장, 서울청 조사2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p> <p>이어서 선임 이사, 감사 두 분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승훈 사무총장</p>	<p>투표 결과, 만장 일치로 두 분의 신규 임원 후보께서 롯데삼동복지재단 선임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p>
<p>장혜선 의장</p>	<p>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p> <p>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호 안건인 “신규 임원 선임의 건”은 결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장혜선 의장</p>	<p>다음은 제2호 안건인 “상임이사 제도 신설 및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p>  <p>상임이사 제도는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삼동복지재단만 해당 규정이 없었던 건입니다. 세 재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p>현재 장학과 복지재단의 정관을 보면 “제 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p>그리고 17조를 보면 상임이사 규정을 두어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p>삼동의 경우 기존 제23조 임원의 대우 규정이 있는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p>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23조를 폐지하고 장학과 복지의 임원보수 규정 및 상임이사 규정을 준용하여 삼동의 정관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변경
기존 정관	<p>[임원보수규정]</p> <p>제23조(임원의 대우)</p> <p>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폐지
신설 정관	[상임이사규정]	[임원보수규정]	신설
	<p>제23조(상임이사)</p> <p>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p> <p>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p>	<p>제2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p> <p>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p>	
일련 번호	<p>신규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제24조 이하 마지막 제41조까지 일련번호는 하나의 번호씩 뒤 번호로 일괄 변경함</p> <p>예) (기존) 제24조(이사회 구성) → (변경) 제25조(이사회 구성)</p> <p>(기존) 제25조(의결사항) → (변경) 제26조(의결사항)</p> <p>.....</p> <p>(기존) 제41조(규정의 제·개정) → (변경) 제42조(규정의 제·개정)</p>		

장혜선 의장 제2호 안건인 “상임이사 제도 신설 및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진우 이사 그동안 롯데삼동복지재단만 상임이사 제도가 없었는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과 함께 동일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깊게 공감을 합니다. 의장께서 취임하신 후 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장혜선 의장	다른 임원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인 “상임이사 제도 신설 및 정관 변경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사 전원	네 동의합니다.
장혜선 의장	그럼 이상으로 모든 이사회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임원이 다음과 같이 날인하다. 끝.

2024년 4월 17일

이	사	회	의	장	장	혜	선			
					이	사	조	돈	영	
					이	사	홍	익	태	
					이	사	정	귀	옥	
					이	사	김	성	화	
					이	사	한	진	우	